

의안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 19. 대전광역시장
2. 건명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따로붙임
4. 검토의견 : 따로붙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2월 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연정수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9년 1월 1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제도를 신설하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
- 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 라. 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과 자전거 이용에 따른 편의성을 높이고자 각종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임.

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7조에서는 시민의 자전거타기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각종 캠페인 등 행사 개최 시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의2에서는 자전거 이용에 따른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자전거 대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시민이 자전거 타기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용편의 증진과 시설물 개선에 역점을 두어 시행함으로써 자전거를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자전거 이용자보험 가입 시, 가입대상자의 범위와 가입조건, 보험수혜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시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며, 각종 자전거 관련 행사시 지원되는 재정에 있어서도 재정지원에 따른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판단하여 지원하고,
- 이와함께 시민자전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체계 정비와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